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기획업무 담당 실장(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9.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당해 특별시”를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18”을 “2,619”로 하고, 일반직 계 “20”을 “2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를 “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u>특별시</u>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 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특별시 · 통합특별시</u> ----- ----- ----- ----- ----- ----- ----- ----- ----- -----
제2조(정원) ① <u>특별시</u>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 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정원) ① <u>특별시 · 통합특별시</u> <u>시</u>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의 배정) ① <u>특별시</u>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u>당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u>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제3조(정원의 배정) ① <u>특별시 · 통합특별시</u> ----- ----- ----- <u>해당 특별시 · 통합특별시</u> ----- ----- -----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u>특별시</u>·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u>----- ----- ----- -----.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618</u>	<u>2,619</u>	+1
•	•	•	
•	•	•	
일반직 계	<u>20</u>	<u>21</u>	+1
•	•	•	
고위공무원단	<u>2</u>	<u>3</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